

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
설치·운용을 위한 운영지침

제 1 조 [목적]

이 운영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‘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’을 준용하여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)를 구성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[심의위원회의 구성]

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 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
제 3 조 [심의위원회의 개최]

심의위원회는 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,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 4 조 [심의내용]

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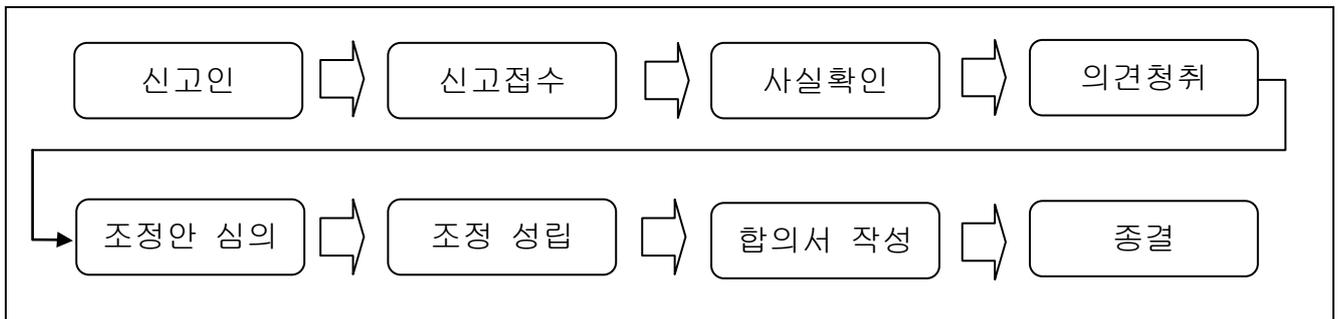
1. 당사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(예상)금액의 10 억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의 사전 심의
<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예시>
 -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 -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
 -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
 -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 -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 -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2. 협력업체 등록·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의 사전 심의
3.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의 심의
4.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연간 거래 규모가 10 억원 이상인 거래의 사후 심의
 - ① 지급기한내 대금지급이 완료 되었는지 여부
 - ② 하자보수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 하지는 않았는지 여부
 - ③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
5. 동반성장협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

6. 기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

제 5 조 [의견청취 및 분쟁조정제도]

1. 심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2.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CEO 에 직접 보고되는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한다.

<분쟁조정제도>



제 6 조 [시정 및 제재조치]

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7 조 [문서의 보관]

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및 조치결과 등 관련 문서를 심의종료일로부터 3 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 1 조 [시행일]

이 운영기준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[시행일]

이 운영기준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